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2008.12.18부령 제000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설비 등(이하 "교육 연구 등"이라 한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분석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 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증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 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등) ① 학교의 장은 자체평가의 기획 운영 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5조(평가 결과의 공시)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 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의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1호, 2008.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평가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자체평가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원격대학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전문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간담회 (2008. 12. 18) 관련 사항 Q&A 中

[질문] 대학평가제와 관련, 평가 인증 인정의 개념상 차이점은?

[답변]

- 대학평가제와 관련, 평가 인증 인정의 개념상 차이점이 있음
- 평가(evaluation)란 평가기구가 대학운영의 전반 또는 교육과정(학부, 학과, 전공 포함)의 운영을 점검 분석 평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 인증(accreditation)이란, 평가기구가 대학운영의 전반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 인정(recognition)이란, 정부가 평가 인증기관의 기본 적격성, 행정재정적 역량, 평가 인증 기준과 절차 등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행위를 의미함

정부의 대학알리미 서비스 제공

'대학알리미'는 2007년 5월에 제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제 6조에 명시된 각 호에 따라 대학의 공시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특례법은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학알리미에서 제공되는 대학의 자료와 자료공개는 교육개발원 교육정보 공시센터에 의해 수집, 운영되고 있으며 각 대학의 정보 확인과 대학별 비교가 가능합니다. www.academyinfo.go.kr

이와는 별도로 (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및 (재)한국의학원이 2005년에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 의과대학 정보시스템(Korea Medical School Information System)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KOMSIS는 의학교육 관련 정보의 저장과 생성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에 따라 의학교육과 관련된 자료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고, 운영, 관리함으로써 의학교육 관련 정보의 생성과 활용에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학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대학별 의학교육 현황, 의과대학 인증평가, 교수 개인별 업적 관리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의학교육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KOMSIS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절차를 간편하게 하도록 연구하고 있으며 질 높은 의학교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된 정보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www.komsis.or.kr

본 재단의 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http://www.kimee.or.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소식 제7호

· 발행처 :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 발행인 : 이무상 · 편집 : 대외협력위원회 · 인쇄 : (재)한국의학원

* 이 소식지는 (재)한국의학원의 지원에 의해 인쇄 되었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소식

제 7 호

2008. 12. 31

발행처: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 전화 02-795-1591 | 팩스 02-795-1592 | <http://www.kimee.or.kr>

의평원 소식

인증평가단 판정위원회 개최 및 인증평가 결과 통보

인증평가단에서는 2008년 평가대학(경희의대, 아주의대, 연세의대, 영남의대)에 대한 서면-현지 방문평가를 완료하고, 인증평가규정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파평과대학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접수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지난 12월 8일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판정위원회에서는 대학별 인증평가 결과 심의와 필수 권리기준의 미충족 항목에 대한 해당 대학의 개선 계획서 제출을 결의하였습니다. 본 판정위원회에는 의료계, 학부모 학생대표는 물론 교과부와 대교협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전공의 교육의 국제화와 인증평가」 심포지엄 개최



본 평가원은 지난 11월 15일(토) COEX 아셈홀에서는 의협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전공의 교육의 국제화와 인증평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Australian Medical Council 멤버로 활동 중인 Professor Robin Mortimer의 초청강연과 함께 우리나라 전공의 교육과 과정평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의 전공의 교육과정과 인증평가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공의 교육의 국제화와 교육 수련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인증평가체제도의 도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3차 「의학교육 평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기본의학교육평가단(단장: 김형규 교수, 고려의대)에서는 12월6일(토) 고려의대 의과학 연구지원센터에서 제3차 의학교육평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총 14개 대학 27명의 의학교육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9월 6일 2차 워크숍에 이어 평가의 기본 원칙, 고전검사이론, 문항반응이론 등 교육평가의 이론과 대학에서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강의와 실습, 학습평가의 기획과 시행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교과부 전문분야별 평가 인증기관 역량강화 사업 보조금 지원 및 사업수행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도 고등교육평가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문분야별 평가 인증기관의 역량강화 사업에 의평원이 참여하여 현재 「국제수준의 의학 분야 평가기준 개발 및 평가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및 절차 개발, 외국과의 평가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영문화, 평가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행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

의평원 제7차 실행위원회가 지난 12월3일(수)에 개최되어, 주요 사업진행사항 보고 및 점검과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4일(목)에는 의학교육계 원로인 자문위원을 모시고 의평원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본원 자문위원으로는 이순형 前 한국의과대학인증평가위원장, 김영명 前 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 이종욱 前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맹광호 前 인증평가단장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분야 평가인증기구 지정 예정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는 대학교육 기관이 자체평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분야 인증기구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1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제하는 간담회가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어 본원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의평원에서는 상기 교과부의 움직임에 대비하여 지난 제6차 이사회(10월31일)에서 교과부 지정 문제를 집중토의하여 2009년도에 전문분야 평가인증기구 지정 신청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인증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예정

인증평가단에서는 교과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평가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를 확정하고 '인증평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내년 1월16일(금)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개최합니다. 참석대상은 인증평가단의 기존 대학추천위원명단 뿐만 아니라 이번에 다시 각 의과대학별 2~3명의 평가위원을 추가 추천받았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소규모 분임토의를 포함한 국내 인증평가제도와 세계적인 동향을 중심으로 논의됩니다.

인정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 (1차)

- 일 시 : 2009. 1. 16 (금) 08:30
- 장 소 :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 일정	
08:30 ~ 09:00	등록
09:00 ~ 09:15	원장 인사 인증평가단장 인사
09:15 ~ 09:35	국내 의과대학인증평과제도
09:35 ~ 10:00	의과대학 인증제도의 세계적 동향
10:00 ~ 10:10	휴식
10:10 ~ 12:00	영역별 분임토의 1. 대학운영체제 2.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3. 학생 4. 교수 5. 시설/설비
12:00 ~ 12:30	종합토의
12:30	폐회

인정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 (2차)

- 일 시 : 2009. 1. 16 (금) 13:30
- 장 소 :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 일정	
13:30 ~ 14:00	등록
14:00 ~ 14:15	원장 인사 인정평가단장 인사
14:15 ~ 14:35	국내 의과대학인정평과제도
14:35 ~ 15:00	의과대학 인증제도의 세계적 동향
15:00 ~ 15:10	휴식
15:10 ~ 17:00	영역별 분임토의 1. 대학운영체제 2.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3. 학생 4. 교수 5. 시설/설비
17:00 ~ 17:30	종합토의
17:30	폐회

의학교육평가에서 컴퓨터 활용검사 이용을 위한 워크숍 개최 예정

기본의학교육평가단에서는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 활용검사 이용을 위한 워크숍」을 2월 7일(토) 오전 9시부터 고려의대 의과학연구지원센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컴퓨터 활용검사인 CBT/CAT를 의학교육평가에 적용하는 교육과 실습을 이번 워크숍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워크숍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학교육 평가에서 컴퓨터 활용검사 이용을 위한 워크숍 (Computerized Adaptive Testing/Computer-Based Testing 워크숍)

- 일 시 : 2009년 2월 7일(토) 09:00
- 장 소 : 고려의대 의과학연구지원센터 정보전산실습실

■ 일정	
09:00 - 09:20	등록
09:20 - 09:25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격려사 - 이무상
09:25 - 09:30	기본의학교육평가위원회장 인사말 - 김형규

제 1 부(오전)	
09:50 - 10:10	의학 교육에서 CAT 도입 - 황인홍
10:10 - 10:20	휴식
10:20 - 11:10	CBT/CAT program 소개 - 이윤환(한림대 통계학과)
11:10 - 12:00	CBT/CAT program 실습 - 이윤환(한림대 통계학과)
12:00 - 13:00	점심

제 2 부(오후)	
13:00 - 13:50	CBT/CAT 결과 문항반응이론에 따른 분석의 예 - 이병우
13:50 - 14:00	휴식
14:00 - 14:50	CBT에서 동등화를 통한 능력모수 및 진점수 산출 - 허선
14:50 - 15:00	휴식
15:00 - 15:50	CAT에서 합격선 설정 - 이규민(연세대 교육학과)
15:50 - 16:00	휴식
16:00 - 16:50	종합토의
16:50 - 17:00	워크숍 평가 및 수료증 전달 - 허선
17:00	폐회

교육관련 소식

대학 평가·인증제 실시를 위한 관련 법령 확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2월 9일 국무회의에 통과되었고, 이어 「고등교육기관의 자체 평가에 관한 규칙」도 2008년 12월 18일 제정되어,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정보공시에 이어 2년에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교과부는 교원, 대학평가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구성되는 '인증기관심의위원회',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마련을 위해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에서는 평가기구가 대학운영의 전반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인증'으로 규정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www.kime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8.12.17 대통령령 제21163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인증의 실시)**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하여 평가·인증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평가·인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3조(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① 인증기관이 평가·인증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인증을 신청한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인증기관의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기관의 평가·인증 프로그램 개발 등 평가·인증의 체계화와 품질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는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하는 데 적합한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를 갖추고 있을 것
3.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또는 지문활동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정관 및 등기사항 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인 경우에 만 첨부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및 자문활동 실적 내용
3.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명세
4. 평가·인증의 기본방침과 평가실시에 관한 내용을 적은 평가·인증실시요강 및 평가기준
5. 평가·인증의 방법·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6. 평가·인증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적은 자료
7. 그 밖에 신청기관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 제7조(인증기관의 재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5조·제6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 제8조(이의 신청)** ① 신청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증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의하여 신청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인증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인증정책의 수립과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평가·인증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증기관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인증기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재지정 및 재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기관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교원
2. 대학의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학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인증기관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이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